



제417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안태준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126호)

2024. 8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 . 안태준의원 대표발의(제2202126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수도권정비계획안 포함 사항 추가(안 제4조)	2

I. 안태준의원 대표발의(제2202126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안태준의원 등 12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7. 23.

다. 회 부 일 : 2024. 7. 24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·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,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).

3. 검토의견

가. 수도권정비계획안 포함 사항 추가 등(안 제4조)

현행	개정안
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.	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배치 하며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7. (생략) <신설>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	8.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9. (생략)	9. -----제8호----- ----- -----
② ~ ④ (생략)	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1)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야

1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
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.

1.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2.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
3. 권역(圈域)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
4.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
6.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

하는 사항에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수도권이라고 할 지라도 북한과의 접경지역 또는 섬지역 등 일부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,

현행법상의 규정이 수도권 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거나 이로 인한 지역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.

현행법 제6조²⁾에서는 법 제정 취지인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정비를 달성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,

-
- 7.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
 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

2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
제6조(권역의 구분과 지정)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**과밀억제권역**: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
 - 2. **성장관리권역**: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
 - 3. **자연보전권역**: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
- ②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토부가 제출한 자료 중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인구 및 사업체 등에 관한 남북지역 간의 격차를 살펴보면, 2023년 기준 인구 규모의 경우에는 북부지역은 186만 1,000명, 남부지역은 581만 3,000명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약 3배인 395만 2,000명으로 나타났고,

사업체 수의 경우에도 2022년 기준으로 북부지역은 21만 4,825개, 남부지역은 64만 9,167개로 약 3배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같은 수도권 일지라도 그 지역적 위치 등에 따라 인구,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.

< 성장관리권역 내 인구,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>

구 분	남부 지역	북부지역	남북지역간 격차
인구 수 (2023년기준)	1,861,000명	5,813,000명	3,952,000명
사업체 수 (2023년기준)	214,825개	649,167개	434,342개
종사자 수 (2023년기준)	748,000명	2,827,000명	2,079,000명

※ 자료: 국토교통부

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, 개정안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,

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수도권 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현행법상의 취지³⁾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.

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첫째, 개정안에 포함된 ‘수도권 안의 지역 간 격차 해소’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‘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’, ‘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’ 및 ‘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’ 등에 이미 포함되어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고,

둘째,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목적은 지역 간 격차 해소보다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함으로,

현행법령 및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내용도 권역별 행위 제한, 부담금 부과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 규제 등 제한 및 규제⁴⁾를 중심으로

3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수도권(首都圈)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4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
- 제7조(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)
- 제8조(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)
- 제9조(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)
- 제12조(과밀부담금의 부과·징수)
- 제18조(총량규제)
- 제19조(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)

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셋째,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,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「섬 발전 촉진법」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74